

비교과교육위원회 규정

제정 : 2018.09.07.

개정 : 2019.04.05.

개정 : 2021.01.08.

담당 : 비교과교육센터(02-950-5548)

----- 목 차 -----

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제1조(목적) | 제2조(기능) | 제3조(구성) | 제4조(위원의 임기) |
| 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| 제6조(회의록) | 제7조(운영세칙) |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⑤항에 따라 비교과교육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 라 한다.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(개정19.04.05.)
2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점검에 관한 사항(개정19.04.05.)
3.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관련 주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9인(위원장을 포함한다)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19.04.05.)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- ④ 위원장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평가환류를 위한 평가위원을 위원회에서 선정한다.(개정 21.01.08)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1.01.08)
-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1.01.08)

제6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